

法學研究와 教育을 위한 컴퓨터의 活用

柳仁模*

I. 머리말

오늘날 컴퓨터의 역할과 기능은 인간의 모든 생활양식에 변화와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불과 수년전 까지만 해도 컴퓨터란 특수한 영역에서 특별한 작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概念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情報社會로 특징지워지는 현대사회의 모든 사회조직과 일상생활은 컴퓨터 시스템과 不可分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고 실제로 직업생활과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道具로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學問的인 영역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자연과학분야는 물론 사회과학과 인문과학분야에도 컴퓨터의 효과적인 활용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이미 의학정보학, 경영정보학등은 학문적인 定礎作業이 완성되어 독자적인 학문의 영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法學分野에도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法律關係文獻들 가운데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받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며, 따라서 정확한 자료를 토

* 慶熙大學校 法科大學 研究教授

대로 공정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할 법률사무나 學問的인 研究活動에도 정확한 法律情報의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들어 구체적으로 법적인 과제의 처리에 컴퓨터가 응용되기 시작하였고 점차 法學教育과 實務에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상황의 전개는 학문분야에 새로운 研究素材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컴퓨터를 體系的, 效果的으로 法學分野에 적용하고 나아가 새로운 法學方法論을 개발하기 위해 法學의 새로운 전공분야의 하나로 法情報學(Computer Science in Law)이 등장하게 되었다.

法情報學은 이미 미국, 유럽등지에서 1950년대 말부터 거론되기 시작하여 주로 Legal Database의 제작과 활용을 중심으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메카니즘적인 實用學問으로 認識되기 시작하였으나 1970년대에 오면서 컴퓨터의 定型化된 論理와 알고리즘을 法的인 사고와 연계시키려는 시도로서 논리학, 수학 및 언어학등에서 사용하는 研究方法論을 法學에 援用하여 상대적인 합리성을 찾아가는 法的인 課題를 自動化가 가능하도록 形式化, 定型화하는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法學方法論으로서 學問的인 定礎作業을 하게 되며 1980년대 PC의 보급이 일반화 되면서 내용적인 진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광범위한 Legal Database의 개발과 學習과 教育을 위한 Tutorial Programm의 개발뿐만 아니라, 나아가 法律相談이나 판결자동화등을 위한 전문가 시스템도 개발되어 있다.

법률분야의 컴퓨터 활용은 實務領域에서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法學教育과 研究에의 활용문제(Computer Aided legal Research)도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독일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CIP(Computer Investigations Projekt)라는 제도를 통해 모든 法科大學에 전산실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法情報學을 교과과목과 考試科目으로 새로이 설정함으로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효과적인

法學教育을 할 수 있는 與件을 實質的으로 구비하게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法學研究와 學習을 위한 컴퓨터의 活用可能牲, 선진국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교육, 연구용프로그램의 開發現況과 앞으로의 전망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法律資料의 效果的인 處理道具로서의 컴퓨터

開放化, 情報化된 사회란 모든 사람이 情報를 共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오늘날 수많은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첨단 정보기기의 개발과 통신망의 발달, 매스미디어의 발달은 정보화 사회로 가는 外形의인 조건들을 충족시켜가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데이터가 존재하고 정보기기가 발달한 것만으로 정보화 사회가 될 수는 없다. 정보란 필요하고 적절한 데이터를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처리한 것만을 의미하며 이러한 정보만이 각종 情報處理裝置나 통신망을 통해 활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散在해 있는 데이터를 有用한 情報로서 제공하는 일은 情報化 社會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특히 경영정보, 의학정보, 법률정보와 같은 전문적인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는 데이터의 정보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¹⁾

情報處理機로 일컬어지는 컴퓨터의 활용이 가장 커다란 효용을 발휘하는 영역은 역시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제공, 구축된 각종정보를 처리하는 일이다. 이러한 컴퓨터를 통해 法學研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것은 文獻의 의존도가 대단히 큰 분야임을 감안할 때 우선 법률정보의 홍수현상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제공받는 일이 될 것이다. 독일의

1) 데이터란 사회현상 자체를 의미하는 반면 그것이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해 의미있는 상태로 제공되었을 때 비로소 정보(Information)가 된다.

경우 1년에 약 200만건의 새로운 判決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중 약 20,000 건이 判例集이나 전문잡지에 수록되고 있고, 약 20,000 편의 論文과 4,000 부의 單行本이 출간되고 있으며 약 800개의 法令이 制定 또는 改正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실제로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지 못하는 현상은 法學研究를 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 흔히 발견되는 일이다. 따라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Data를 수집, 가공하고 적절하게 분류하여 제공해 주는 정보의 처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法律情報의 集合體인 Legal Database의 제작이 진행되게 되었고 현재 全世界的으로 약 100여개의 Legal Database가 상업적으로 제작되어 제공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미국 등 영미법 계통에서 먼저 발달하여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에도 일반화 되어 있으며, 한국에도 1992년부터 민간에서 제작된 KOLIS라는 시스템이 상업적으로 제공되고 있다.²⁾

Legal Database란 컴퓨터 시스템에 기억 또는 저장된 법률관계자료의 집합체로서 컴퓨터의 신속, 정확한 기능을 이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창출해 내는 기능을 하는 情報圖書館 (Information Library) 으로 法令과 判例 및 法律關係著書 및 論文등이 망라적으로 수록된 On Line Database로서³⁾ 그 起源은 1964년 미국의 오하이오 법률사무소에서 처음 제작된 判例 Database를 Mead Corporation 이라는 會社가 발전적으로 인수함으로서 제작된 LEXIS라는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고, 그 후 내용이 더욱 확장되어 현재는 미국의 聯邦法, 州法에 대한 資料는 물론, 영국법, 프랑스법에 대한 자료까지 수록된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대표적인 Legal Database로 評價되고 있다. 또한 1969년 제작된 WESTLAW라는 綜合的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法律情報 를 수록하여

2) 한국법률정보시스템(KOLIS)에서는 현재 1945년 이후의 민, 형사사건 대법원 판례 각 3만여건이 수록된 판례데이터베이스와 신, 구 법령이 망라된 법령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3) Bund, Elmar; Einführung in die Rechtsinformatik 242면 이하 참조.

LEXIS와 함께 대표적인 미국의 Legal Database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판례가 가장 중요한 法源을 이루는 美國의 法科大學에서는 이를 基礎로 일찌기 Computer Law라는 學問領域이 개발되었다.

유럽에서는 1969년 벨기에서 CREDOC이라는 Legal Database가 제작된 것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에서도 서둘러 제작에 참여하였고, 최근에는 CELEX라는 EC 법에 대한 判例를 수록한 Legal Database도 제작되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많이 보급된 것은 이태리의 ITALGIURE라는 시스템인데 총 250만개의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고 80년대 후반 기준으로 모든 법률가의 4분의 1정도가 사용을 할 정도로 그 보급이 一般化되어 있다고 한다.⁴⁾

그러나 내용적으로 가장 종합적이고 짜임새가 있다고 인정받는 것은 역시 독일의 JURIS라는 시스템으로⁵⁾ 독일은 1973년 법무부의 주도하에 법률정보의 흥수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안으로 法學의 全分野에 걸친 法條文, 單行本, 論文 및 上, 下級審 判例등이 망라적으로 수록된 Legal database의 개발에 착수하는데, 稅法분야와 社會法분야에서부터 시범적으로 관련자료들을 전산화하기 시작하여 점차 法學의 전영역으로 확대하였다. 그 후 수 차례에 걸친 시험과정과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과정을 거쳐 그 效率과 成果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1985년부터는 이를 一般에開放하고 民間會社의 形태로 運營하고 있는데 현재는 法學을 研究, 學習, 教育, 適用하는 法曹人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評價 되고 있다.

JURIS는 여러가지 종류의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判例情報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판례정보는 독일의 현 법재판소 판례를 비롯하여 각법영역의 최고 재판소 判例의 要旨 및 全文이

4) Bund, 위의 책 272면.

5) Juri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ur PC 1989, 266면 이하 참조.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으며, 하급심의 주요판례와 1978년 이후에는 각 법원들과의 연계하에 출판되지 아니한 판례들도 수록되어 있다. 판례정보는 1992년 말 기준으로 약 300,000 건의 판례가 수록되어 있고 매년 약 25,000건씩 추가되고 있으며, 매시간 새로운 판례가 추가되고 있어서 신속하게 새로운 판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1991년부터는 유럽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국제분쟁판례를 수록하였던 CELEX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흡수하여 함께 제공하고 있다. 法令을 제공하는 法令情報은 독일의 現行法條文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憲法, 民事法, 刑事法 등 基本法分野는 물론 각종 법령의 제정초안 및 시행령 까지도 망라되어 있으며, 현재 모든 법령의 80% 정도를 수록하고 있다. 개정된 법령에 대해서는 改正前의 條文과 改正後의 조문을 개정날자와 함께 제공하여 변화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法學文獻을 수록한 문헌데이터베이스도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은데 약 200여개의 전문 학술지에 수록된 法學關聯 文獻들이 요약문과 목차와 함께 제공되고 있으며 博士學位論文을 중심으로 個人 저작물의 첨가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JURIS는 철저하고 오류없는 데이터입력을 위해 총 6단계에 이르는 입력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효과적인 檢索을 위해 Field 分析, 자연어체계와 학문적체계 등 構築作業에서 필수적으로 감안되어야 한다. 그 제작과정을 보면 各法院에 파견된 法律専門가들에 의해 判例를 法的으로 분석하고, 그 후 스캐너와 Passat, Parat, Gogo 등의 입력점검 프로그램을 거쳐 Golem이라는 검색프로그램과 함께 일반에 제공되고 있다. 또한 법과대학과 研究所 등 研究機關에는 거의 무료로 제공되고, JURIS의 사용을 위한 教育이 자주 실시되고 있어서 활용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On Line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년단위로 CD-ROM을 제작하여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편안한 검색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법률문헌

의 목차와 내용을 담은 크고 작은 CD-ROM들이 제작되어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⁶⁾

일본의 경우도 80년대의 PC 보급과 함께 법률정보를 다루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현재 LEX/DB, LEGAL BASE, 判例 Master 등 3종의 Legal Database 가 정부차원의 커다란 지원을 받으면서 육성되고 있다.⁷⁾

韓國의 경우는 이미 80년대 초반에 사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에 착수 한 바 있으나 구축과정에서 검색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용성이 없는 것이 되고 말았으며, 그 후 민간 기업에서 개발에 착수하여 判例와 法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Legal Database가 상업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각 기관에서 자체 제작된 Legal Database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Legal Database의 활용문제는 法學研究에 局限에서 필요한 정보일 뿐 아니라 一般人들에게 法律情報 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서 법감정을 순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고, 전문가들에게는 효과적인 實務遂行과 實證的, 科學的研究의 土臺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方法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Legal database는 知識 Base로서 교육용 Tutorial Programm이나 전문가시스템의 제작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므로 그 제작과정에서 法律家에 의한 고도의 專門性이 요구되며, 따라서 法情報學의 시작은 Legal Database의 제작에서 出發한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6) 대표적인 것으로는 1976년 이후 출간된 법학논문의 내용을 수록하여 CD-ROM 으로 제작된 NJW-Leitsatzkartei 와, 연방법원의 민형사 판례를 수록하여 하드디스크의 형태로 제작된 BGH-DAT 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7) 일본의 경우 연간 10억엔 이상의 정부지원이 법률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III. 프로그램화된 學習(Programmiertes Lernen)

프로그램화된 學習이란 효과적인 法學研究와 教育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으로 Legal Database에 수록된 법률정보를 지식 Base로 기준의 法學方法論의 내용을 프로그램화 하는 것이다. 즉 단순한 정보의 제공자로서의 컴퓨터가 아닌 教育의 프로그램이 加味된 Tutorial Programm으로서 教科書, 判例集, 問題集의 형태가 종합적으로 연결된 學習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점차 제2의 言語로서 간주되어가는 컴퓨터를 법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과 컴퓨터의 논리와 효과적인 방법론을 통해 法的인 課題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한다는 것 나아가 中世이래 변함없이 지속되어온 解釋學의 法學研究方法論을 컴퓨터의 논리구조에 맞게 再照明, 再構成해보자는 시도는 공허한 외침이 아닌 피부로 실감하는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과제는 法學에 대한 철저한 지식은 물론 프로그래밍의 論理와 알고리듬을 이해하여야 할 뿐 아니라 前述한 바와 같이 法學의 많은 理論들을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 형식화, 정형화(Formalisieren) 하는 작업이 先決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定型化된 Data나 論理만을 處理할 수 있기 때문이다.⁸⁾ 따라서 法學의 과제로서 相對的인 合理性의 發見이라는 命題를 컴퓨터의 絶對的인 Logic에 맡추어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法論理, 法的思考를 定型化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訴訟上의 단순한 計算과 같이 별도로 정형화의 필요성이 없는 영역도 있겠지만 이러한 과제에 局限해서 法情報學이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事實判斷과 함께 規範的인 價值判斷이 이루어져야 하는 法學領域의 정형화가 가능한 것인가? 可能하다면 어떠한 方法에 의하여야 할 것인가? 이는 法情報學이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核心的인 課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학문분야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數學과 形式論理學 分野가 가장 유용

8) Bund, Elmar; Rechtsinformatik aus der Sicht der juristischen Methodenlehre, Informatik und Recht 1988, 273면

한 분야가 될 수 있으며, 法經濟學的인 方法論과 같이 기본적으로 계산이 可能해지는 方法論도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다. Database의 검색에서 중요한 의미를 같은 數學의 集合概念과 蓋然性에 의한 Analogie 問題를 연계시켜 規範的인 價值判斷의 效果를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意味體로서의 法言語를 컴퓨터의 연산처리가 가능한 記號로서의 言語로 置換하여 다시 출력과정에서 의미체로 전환하는 方法을 개발하느 것과 같이 다양한 形式化의 可能性들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法이란 정체적이고 固定的인 概念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生活規範이다. 따라서 時代와 社會狀況, 社會潮流에 따라 끊임없이 변모하는 생활패턴에 적용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져야 비로소 효과적인 規範으로서의 機能을 다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컴퓨터의 정보처리기능을 법적인 자료분석에 적절히 활용하고, 變數를 중심으로 可變的인 論理展開를 원칙으로 하는 컴퓨터의 論理를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法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法學학습을 위한 Programm은 70년대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에서 처음 실시되어 PLATO (Programmed Logic for Automatic Teaching Operation)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고 하버드대학과 미네소타 대학에서도 이를 위한研究所 (Center for Computer Assisted Legal Instruction)를 설치하여 현재 수백명의 研究員들에 의해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⁹⁾

독일에서도 현재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제작되어 研究와 教育에 활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튜빙겐 대학의 Haft 교수와 그 研究팀이 IBM의 지원을 받아 제작에 착수했던 判決自動化를 위한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이 수

9) 자세한 내용은 Schulmeister, Autorensystemen und Alternativen in Eberle, Informationstechnik in der Juristenausbildung(1989) 161면 이하 참조

년간의 研究 끝에 실패로 끝난 이후 방향을 선회하여 제작된 T binger Dialog이라는 刑法, 公法 分野의 教育프로그램을 들 수 있고, Marburg대학에서 개발된 ELECOM이라는 전산화된 주석서가 教育에 응용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Saarbrücken 대학의 Herberger 교수 研究팀이 개발한 JULE라는 教育프로그램도 우수작으로 評價된다.¹⁰⁾ 韓國에서는 아직 이러한 법학 교육용 전문 프로그램이 全無한 형편이지만 최근 컴퓨터 통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法律知識을 전달하여 주는 프로그램들이 발견된다.¹¹⁾

이와같은 교육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에의 활용은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컴퓨터세대 法學徒에게 법적인 사고와 컴퓨터 마인드를 동시에 갖추기 위한 필수적인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방법론의 개선을 통해 컴퓨터의 등장으로 새로이 대두되는 여러가지 법적인 과제나 문제들을 점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論理構造와 法的인 思考의 연계점을 찾아 법적인 과제를 法情報學의 方法論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能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法科大學教育이 法曹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教養과 資質을 함양시킬 수있는 내용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은 수없이 받아왔다. 특히 暗記力測定 為主의 사법시험을 준비시키는 것이 사실상 법과대학 교육의 대부분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다. 컴퓨터가 일반화되는 시점에 암기력테스트 위주의 시험방식을 아직 버리지 못하는 불합리한 고시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날이 커가고 있다. 法科大學을 考試學院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려면 司法考試制度의 改善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認識이 확산되어 감을 감지할

10) 교육용 프로그램인 Jule는 Tony Miller의 법정보학 전공의 박사학위논문의 일환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Saarbrücken 대학교의 법학교육용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

11) 최근 HITEL에서는 한기찬법률여행이란 코너에서 민법, 형법, 상법, 교통법 분야에 대한 간단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일반인을 위한 일종의 교육용 홍보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때, 고시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우리의 법과 대학교육이 常識을 폭넓게 구비한 專門人을 만들 수 있고, 법조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적사고 배양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국제화 물결에 나오되지 않는 法曹人을 培養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교육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화 된 법학교육 방법은 法學徒에게 새로운 관심을 고취시키고 법과대학 교육의 변화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자그마한 시작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선진국의 법과대학에서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자리잡고 학문적인 研究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法情報學의 체계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법조실무에서 필수 불가결해진 컴퓨터의 활용문제를 학문적으로 定礎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IV. 事例問題 解決을 위한 프로그램

독일이나 한국과 같은 大陸法 계통의 法體系에 있어서의 法學이란 法典의 解釋學이 그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으며 事例에 나타난 行爲의 法의인 適用(Subsumtion)을 妥當하게 하는 方法論을 教育하는 것은 法學教育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사례해결을 위한 方法論 자체는 비교적 定型化된 것으로 마치 수학문제를 공식과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나가듯 Computer의 解法(Algorithm)에 맞추어 법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야로서 教育用 프로그램의 개발도 일찌기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法學方法論의 再構成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특히 法의인 思考패턴을 컴퓨터의 論理構造에 대응시킬 수 있도록 법적인 적용의 일반화된 원칙을 定型化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학교육, 연구방법론의 전반적

인 再構成을 위한 시도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昨今의 法學教育이 Legal Mind 의 형성을 위한 교육이 되지 못하고 條文과 意義만을 암기하도록 실시되고 있음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는 마치 수학문제를 풀어야 할 과제를 가진 학생에게 공리와 정식만을 가르치는 것과 같아서 실제로 새로운 수학문제를 접할 때 이를 풀어낼 수 없는 것과 類似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事例中心의 法理論教育도 그 실상은 사례를 풀어가는 方法論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類型化된 事例群을 발견하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는 수학시험 공부를 위해 많은 문제의 해답을 미리 암기하여 두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統一된 研究方法論, 教育方法論의 開發은 단지 교육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함이라는 目的을 넘어 法學自體의 本質的인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독일의 경우 70년대에 이미 JUDITH라는 프로그램이 개발된 바 있고,¹²⁾ 그 후 DISUM 이란 프로그램도 개발된 바 있으며, Saarbrücken 대학의 法情報學研究所에서는 Sophos라는 형사사례해결을 위한 보조프로그램이¹³⁾ 1991년에 개발되어 독일의 各 法科大學 전산실에 보급되어 있고 사례문제해결이 사법시험과 모든 평가에 기본이 되어 있는 독일의 法學徒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V. 人工知能言語를 이용한 전문가시스템

1. 翻譯프로그램

法學의 研究와 관련하여 전문가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여려가

12) Bund, 위의 책 279면 이하 참조

13) Sophos는 법과대학 대학원생인 M. Kraft에 의해 개발되었으나 그 후 Herberger 교수 연구팀의 검증을 거쳐 상업화 된 형사사례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를 생각할 수 있으나 우선 법률문헌의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外國의 법률문헌을 自動으로 錄譯하여주는 법률문헌 번역프로그램의 개발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法體系가 獨逸, 日本등 大陸法을 계수하였고 따라서 연구에 참고해야 할 문헌의 상당수가 대륙법계 국가의 문헌이고, 語學의 장벽을 가장 어려운 장애로 느낄 수 밖에 없는 法學界의 현실을 생각할 때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진다.

기계번역시스템을 이용한 각종 번역프로그램은 語學分野 또는 다른 일반 분야에서 이미 활용이 되고 있지만 법률문헌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법률문헌 專用 번역프로그램의 개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英語, 獨逸語와 같은 유럽언어의 번역은 法的인 專門性 이외에 언어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감안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므로 그리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한글과 日本語사이의 호환관계는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가고 있고,¹⁴⁾ 독일문헌의 번역을 위한 프로그램도 筆者가 獨逸에 제류하던 1991년 개발에 착수하여 부분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¹⁵⁾

이러한 번역프로그램의 개발이 본격화되고 국내의 모든 法學者들이 이를 이용해 귀중한 외국의 文獻들을 INTERNET와 같은 국제적인 학술통신망을 통해 쉽게 습득할 수 있다면 外國語 解讀能力이 곧 學問的能力으로 평가받는 불합리한 풍조가 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 法律相談 프로그램

종래에 法情報學의 궁극적인 과제로 간주되었던 문제는 法的인 最終判斷

14) 번역시스템의 필요성에 관해서 동아대학교의 한용길 교수도 표명한 바 있다. (동아법학 제 16호, 131 면 이하, 민법학에 있어서 컴퓨터시스템의 활용방안)

15) 1991년 본인이 독일의 Saarbrücken 대학의 법정보학 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있을 당시 연구과제로 TRANS라는 독일문헌 영어번역 프로그램의 개발에 착수하여 약 3개월간 연구한바 있었으나 완결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을 컴퓨터에게 위임하는 전문가시스템 판결자동화 프로그램의 개발이었다. 즉 컴퓨터에 事件의 概要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미리 입력된 자료들을 스스로 분석하여 법관이 담당하던 최종의 法的判斷結果를 도출하여주는 프로그램의 개발이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70년대초 IBM의 막대한 지원을 받은 튀빙겐대학의 Haft교수에 의해 무려 6년간 판결자동화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도한바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에서 여러가지 이유에서 모순과 어려움이 새로이 발견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그 후 이러한 目的을 약간 수정하여 最終判斷의 可能性을 人間에게 委任하고 이를 위한 여러가지 可能性을 結論으로 도출해주는 法律相談 프로그램의 개발로 전환되었다. 法律相談 프로그램이란 변호인에게 法的問題를 相談하듯 컴퓨터와 대화형식으로 필요한 기초자료를 컴퓨터에게 제공해 주면 이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화된 분석기능을 이용하여 적절한 해답을 구해주는 것으로 흔히 DSS (Decision supporting system) 이라고 부른다.

독일에서는 전술한 Haft교수의 研究가 실패로 돌아가자 Haft교수의 研究方法이 적절하지 못하였다는 비판과 함께 법적인 최종판단이 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는 構造的인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 의미있게 제기되었다.¹⁶⁾ 또한 이러한 構想과 試圖는 倫理的, 宗教的側面에서도 비난을 받아왔는데, 이는 컴퓨터에 의해 人間이 판단되어지는 것을 容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계는 人間의 판단을 위한 道具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그 후 이러한 주장은 法情報學者들 사이에서도 넘어가지 못 할 한계로서 認識되기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最終判斷의 기초자료를 제공해주는 相談 프로그램의 개발이 주요 과제가 되기에 이르렀다.

Saarbrücken의 Herberger교수 研究팀은 이에 따라 SUSA라는 法律相談 프로그

16) Philips, Lothar; Der Expert ohne Urteilskraft: Vom Nutzen heutiger Expertensystem 179 면 이하. Herberger, Maximilian; Zur Rechtfertigung der Informatik-Komponente in der juristischen Ausbildung, JurPC 1989, 3; 그러나 괴팅겐 대학의 Mincke 교수는 Haft교수의 연구가 실패로 끝난것이 법학의 구조상 불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전문가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언어의 선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을 뿐이라고 한다.

램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는데, 우선 製造物 責任과 관련된 主題로 人工知能言語인 Prolog를 이용하여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매학기 계속되는 세미나 시간을 통해 그 内容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본격적인 상담프로그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최근 HITEL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률상담사례(LAWCASE)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해 民事, 家事, 商事, 刑事 相談事例를 검색하여 볼 수 있다.

VI. 앞으로의 展望 및 맷는말

獨逸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본 法學研究를 위한 컴퓨터의 활용문제는 최근 하나의 뿐을 형성하는 分野로 評價할 수 있다. 또한 실무영역에서 Computermind가 확산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研究素材가 生成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학문적인 研究는 아직 충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法學研究와 教育에 컴퓨터의 活用이 效果的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Legalmind와 Computermind가 함께 갖추어 질때 비로소 가능해 진다. 다시 말해 법적인 지식과 함께 컴퓨터의 기본구조 使用能力이 전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Legal Database의 제작에서부터 전문가시스템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모든제작과정에 法律專門家의 參與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즉 컴퓨터 전문가에 의해 제작된 프로그램은 法學研究나 教育이라는 고유한 作業에 일정한 범위 이상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 198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Legal Database의 제작과정에서 보여준 施行錯誤도 그런 의미에서 당연한 결과라과 할 수 있다.

法情報學은 그 概念과 内容, 限界등도 아직 定礎되지 못한 단계인 만큼 개발의 여지가 많은 분야이다. 法情報學이란 분야는 컴퓨터를 法學에 효과적으로 응용해 보자는 취지에서 생성된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Computermind를 가진 法曹人의 量的 增加가 先行되지 않으면 不可能하다. 또

한 이를 위해서는 법과대학의 教育과정에 Computermind를 형성시켜줄 수 있는 교과과정을 신설하여 장차 나타날 潛在的인 需要와 必要性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1950년대 말 法學에 컴퓨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되었던 견해들이 사학에서의 외로운 외침이 되었지만 오늘날 미국과 독일등 선진국에서 當面課題로 대두되었음을 상기할때 나날이 다가오는 한국의 본격적인 情報化社會의 도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法學界가 되기 위한 學問의 定礎作業이 시급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모든 분야의 教育現場에 컴퓨터의 활용이 一般化 되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문사회과학분야, 특히 法學分野에서의 컴퓨터 활용은 극히 制限의 機能에 局限되어 있고, 文書의 作成을 위한 타자기의 대용품정도로 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이미 각종 법률데이터베이스의 제공으로 법률자료의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고 法曹實務의 自動化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法學을 研究하고, 學習하고, 適用하는 컴퓨터마인드를 가진 모든 法曹人の 활동영역이 발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可能性은 폭넓게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死藏시키고 있음은 극히 안타까운 현실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영학이나 경제학, 사회학등 인접 社會科學 分野에서는 이미 컴퓨터의 전문적인 활용기술과 컴퓨터를 활용한 研究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법학분야에서도 外國과 비교해 볼때 상당한 거리를 느낄 수 있다. 가까운 日本의 경우만 보더라도 법과대학 교육과정에서부터 상당히 폭넓은 전산교육이 병행되고 있는 現實을 비교해 볼 때 아쉬움이 倍加된다.¹⁷⁾

요즈음 教育改革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때 보다도 고조되어 있다. 중세以来 法典解釋을 중심으로 한 解釋法學의 패턴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단편적인 지식암기 위주의 考試準備로 대부분을 이루는 법과대학의 教育改革의

17) 일본의 京都大學에서는 MINJI라는 법률데이터베이스를 자체제작하여 연구와 교육에 활용하고 있고 大阪大學에서도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고 한다.

실질적인 内容은 새로운 方法論의 개발로 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며 이는 곧 法科大學의 교육과정에서 부터 體系的인 電算教育을 접목하고 電算媒體를 이용하여 效果的인 教育을 可能하게 할 교육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법률데이터베이스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새로운 法學研究方法論의 開發이라는 命題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